

## 지휘서신 제10호: 준비태세, 외출·외박 및 휴가

### 1. 관련근거

- 가. 美육군규정 600-8-10 휴가 및 외출외박 (2020. 6. 2.)
- 나. 美인도태평양사령부령 제0536.2호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반테러 프로그램

2. 내용: 군인은 각자의 건강, 사기 및 복지를 위하여 휴가를 가능한 한 자주 사용하도록 한다. 이것은 육군의 정책이다. 휴가는 모든 군인의 권리이다. 지휘관 및 관리감독자는 부대의 준비태세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인원들이 휴가 및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및 계획을 마련한다. 다만 준비태세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목적: 본 서신은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의 준비태세, 연락 및 소집, 휴가 및 외출·외박 관련 정책을 정립한다.

### 4. 준비태세 소집에 관련한 기준

- 가. 지휘관은 국외(대한민국 외) 휴가 및 외출·외박 인원이 전 인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국내(대한민국 내) 소재 인원 중 최소 10분의 9는 경계 발령 4시간 내로 소집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지휘관은 부대가 위와 같은 준비태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며 위 기준에 부합하는 연락 및 응신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휴가 및 외출·외박 규정, 이동거리 제한, 각 제대의 준비태세에 따른 소집 시간 단축 등이 있으며 그 외의 방법도 가능하다.
- 다. 모든 제대는 지휘관 또는 지정된 보좌관(부지휘관 또는 최선임장교) 1인이 항상 국내(대한민국 내)에 소재하도록 한다.
- 라. 사단 각 참모부는 참모 또는 부참모 중 1인이 항상 국내(대한민국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사령부 주요직위자의 임무는 중단 또는 공백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각 참모 및 부참모는 사단 참모장에게 휴가 또는 외출·외박에 관하여 사전 보고한다.

### 5. 외출·외박 및 휴가

- 가. 모든 휴가 및 국외(대한민국 외) 외출·외박에 관한 승인권자는 해당 인원의 지휘계통의 1차 상급 중령급 지휘관이다. 승인 권한은 동일계통 1차 상급 대위급 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각 인원은 소속 제대 정보부서로부터 여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인도태평양사령부 지침 0536.2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반테러 계획서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국내(대한민국 내) 휴가·외출·외박과 국외(대한민국 외) 휴가·외출·외박은 구분하여 추적한다.

나. 국내(대한민국 내(제주도를 포함한다))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 1) 해당 인원의 지휘계통 1차 상급 대위급 이상의 지휘관, 또는
- 2) 사단 참모부 중령급 참모 또는 부참모. 이 경우 외출 또는 외박은 추적을 위해 각 중대본부를 통해 처리된다.

다. 한반도작전구(KTO) 내 순환배치부대를 지원하는 부대의 지휘관은 일반 휴가 또는 국외(대한민국 외) 외출·외박을 승인할 수 없다. 다만 대대장은 긴급휴가, 청원 휴가, 출산휴가는 승인할 수 있다.

라. 소속 주둔지로부터 75마일 이상 벗어난 지역에서 외박을 하고자 하는 인원은 휴가 또는 외박을 신청하여야 한다.

6. 본 서신으로서 휴가, 외출 및 외박에 관한 기존의 모든 지휘서신의 내용은 철회한다.

7. 이 지휘서신에 관한 담당부서는 사단 인사참모부(DSN (315)755-2230)로 한다.

수신: 2CAB 여단장, 21D DSB 여단장, 210 FA 여단장, HHBN 대대장, R-BCT 여단장, DIVARTY 여단장. 끝.

  
WILLIAM D. TAYLOR  
Major General, USA  
Commanding

